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
(www.jbjje.kr)

전주교육지원청 공립중등학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2024. 3. 1.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JU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적용 범위)	1
제 3 조 (방침)	1
제 2 장 교사 전보	1
제 4 조 (전보대상)	1
제 5 조 (전보시기)	1
제 6 조 (전보방법)	1
제6조의2(관내전보방법)	2
제 3 장 교감 전보	3
제 7 조 (전보대상)	3
제 8 조 (전보방법)	3
제 9 조 (기타)	5
부 칙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립 중학교 교감·교사 및 영양교사 인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19.>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중학교 교감·교사 및 영양교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08.19.>

제3조(방침) 이 기준은 인사관계 제 법규 및 전라북도교육청중등인사관리기준과 영양교사인사관리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되, 학교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방침을 적용한다.<개정 2020.08.19.><개정 2022.8.17>

제 2 장 교사 전보

제4조(전보대상) ①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대상자 및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8.17>

② 관내 전보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교사정원의 40% 이내(소수점 절사) 전보 범위에 포함된다. 단, 감축전보 대상자는 제6조의2 ③항에 준한다.<개정 2020.08.19.><2022.8.17.><2023.8.4.>

1. 동일교·전주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역 만기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제5조(전보시기) 정기전보는 매 학년말에 실시하되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보방법) ① 각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에서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교원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하되, 임지 배정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2023.8.4.>

1. 관내 감축전보 교사
2. 관내 일반전보 교사
3. 타 시·군에서 순환전보로 전입한 교사

4. 타 시·군에서 감축으로 전입한 교사
5. 타 시·군에서 일반전보로 전입한 교사
6. 타 시·군에서 복직으로 전입한 교사
7. 타 시·도에서 전입한 교사
8. 신규교사

② 임지배정은 전보서열부(관내 서열부 및 전라북도교육청 서열부)에 의하고 해당 교사가 제출한 희망교(지)를 반영하되, 희망지가 없을 경우 임의배정 할 수 있다. 단, 영양교사의 임지배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서열부에 따른다.<개정 2020.08.19.>

③ 학교의 교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④ 특수교사의 임지배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비를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7.08.03.>

제6조의2(관내전보방법) ① 전보 대상에 해당되는 교사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전보희망 교사는 별첨의 관내전보 희망카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8.17>

② 관내전보는 관내 일반전보와 관내 감축전보로 구분하되, 관내 일반전보는 본인의 희망학교에 인사요인이 없을 경우, 전보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전보(전출신청)할 수 있다.

1. 학급 감축 또는 과목 조절 상 부득이한 경우
2. 직계 존비속 관계의 교원이 동일교에서 근무하는 경우<개정 2017.08.03.>
3. 체육 지정종목 육성학교 결원발생시 현임 학교장의 신청과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④ 동일교에서 근무하는 부부교원은 동일지역의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단, 임지배정의 순위는 관내 감축전보와 관내 일반전보의 중간 순위로 한다.<신설 2017.08.03.>

⑤ 관내 전보서열부는 현임교 근속경력(단, 전주시 전입 이후 감축전보자는 전임교 근무연한을 합하여 현임교 근속경력으로 함), 교육경력, 학교규모 가산점(단, 학교규모 가산점의 실제 부여는 2019.03.01.이후 근무분부터 적용)을 합산하여 작성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08.03.><개정 2018.08.20.>

1. 현임교 근속기간이 많은 자(감축전보자의 경우 전임교 근무연한 포함)
2. 학급규모 가산점이 높은 자<개정 2018.08.20.가산점 적용 2019.03.01.자 이후>
3. 호봉이 높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⑥ 관내 전보서열 평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08.03.>

2. 현임교 근속경력 가산점: 1년당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0.5점 부여)

3. 교육경력 가산점은 15호봉 이하는 3점을 부여하고, 16호봉 이상은 1호봉당 0.08 점을 가산하되 상한점은 5점으로 한다.(인사시행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2023.8.4.>

구 분	점 수
40호봉 이상	5.00
39호봉	4.92
⋮	⋮
17호봉	3.16
16호봉	3.08
15호봉 이하	3.0

4. 학교규모 가산점: 학교규모(특수학급을 제외한 학급수)에 따른 월단위 가산점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되, 2019.03.01.이후 근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단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상담교사 및 특수교사는 17학급 기준에 준하여 부여한다.<개정 2018.08.20.>
<2023.8.4.>

구 분	점 수(월)
25학급 이상	0.085
18학급 ~ 24학급	0.064
9학급 ~ 17학급	0.043
4학급 ~ 8학급	0.021

⑦ 영양교사의 관내전보는 유·초,중,고 학교급을 통합하여 학교급이 다를 때도 인정한다.<개정 2020.08.19.>

제 3 장 교감 전보

제7조(전보대상)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및 전입한 교감, 교육전문직원에서 전직한 교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8.17><개정 2022.8.17>

제8조(전보방법) ① 교감 임지배정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7.><2023.8.16.>

1. 관내 학교 통폐합 및 정원감축에 따라 재배치한 교감
2. 순환전보로 전입한 교감 및 교감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된 교육전문직원

- 3. 일반전보로 전입한 교감 및 교감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교육전문직원
- 4. 복직한 교감
- 5. 신규교감

② 임지배정은 관내 서열부에 따라 해당 교감이 제출한 희망교(지)를 반영하되, 희망지가 없을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임의배정 할 수 있다.<개정 2022.8.17><2023.8.4.>

③ 관내 서열부는 교감경력, 교육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한다.<개정 2022.8.17>

- 1. 호봉이 높은 자
-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④ 관내 서열 평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7><2023.8.4.>

- 1. 교감경력 가산점

교감경력	점 수
3년 이상	3.0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2.5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	2.0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1.5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0
1년 미만	0.5
없음	0

2. 교육경력 가산점은 35호봉 이하는 2점을 부여하고, 36호봉 이상은 1호봉당 0.1점을 가산하되 상한점은 3점으로 한다.(인사시행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개정 2023.8.16.>

구 분	점 수
근가 5호 이상	3.0
근가 4호	2.9
⋮	⋮
36호봉	2.1
35호봉 이하	2.0

⑤ 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는 교감 자격 취득일부터 교감경력으로 인정하고 제8조①항에 준하여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2.8.17.>

⑥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배정할 수 있다.<2023.8.16.>

- 제9조(기타) ① 신설학교의 교원 관내전보동의는 신설 사무취급자가 대행한다.
② 이 기준 외의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중등교원인사관리 기준에 준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기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기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①항)
8. 본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기준은 2013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10. 본 기준은 2015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11. 본 기준은 2016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12. 본 기준은 2017학년도 학년말(2018.1.1.)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13. 본 기준은 2018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단, 학급규모 가산점의 실제 부여는 2019.03.01.이후 근무분부터 반영한다.)
14. 본 기준은 202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기준은 2023.3.1.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16. 본 기준은 2024.3.1.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